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10-14

방송광고판매사업 회계기준 정책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광고판매사업 회계기준 정책에 관한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관리회계 학회

책임연구원 : 박준호(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 구 원 : 홍사선(한양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박민영(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이성주(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Contents

목차

요약		viii
I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	1
II	방송 및 방송광고판매제도 현황	5
	1. 방송광고판매제도 현황	5
	1) 해외 방송광고판매제도	5
	2) 국내 방송광고판매제도	9
	2. 방송관련 회계제도	12
	1) 해외 방송관련 회계제도	13
	2) 국내 방송 및 방송광고판매 관련 회계제도	15
III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	19
	1. 개발방법론	19
	2.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	22
	1) 기준의 구성	22
	2) 기준의 내용과 근거	24
	① 제1장 총칙	24
	② 제2장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7
	③ 제3장 재무상태표	31

④ 제4장 포괄손익계산서	42
⑤ 제5장 보칙	48
⑥ 부속명세서	50

IV	결론	53
-----------	-----------	-----------

첨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	56
-----------	-------------------------------------	-----------

Contents

표 목 차

<표 1> 국내 방송광고판매제도 관련 주요내용	9
<표 2> 방송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 의무	17
<표 3>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의 구성	22
<표 4> 제1장 총칙의 구성과 구성근거 및 필요성	24
<표 5> 제2장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의 구성과 구성근거 및 필요성 ..	28
<표 6> 지역별(지역본부별) 매출액 명세서(안)	51

Contents

그림 목 차

[그림 1]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체계	20
---	----

요 약 문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 규제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제반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경쟁 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정보를 규명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산업에 대한 경쟁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요 및 내역을 규명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회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의 확보, 사업자간 공정경쟁, 광고시장의 활성화, 중소방송지원(취약매체지원), 방송발전기금 산정기반의 확보 등을 위해 공·민영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정리(처리) 및 보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인 계획 및 수행을 위한 규제정보수요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기준(고시)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였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정보는 방송광고 판매정책의 사후 규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된다.

I는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로 민영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규제회계제도 정비의 필요성 및 회계자료의 제출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안 제 73조의5(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가 규정하고 있는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고시의 기초(안)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II는 ‘방송 및 방송광고판매 제도현황’으로 방송 및 방송광고판매에 관한 해외 및 국내 시장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방송광고판매사업 관련 회계제도를 분석하고자 함으로써 본 연구 관련 함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디어랩에 대한 회계제도의 자료는 매우 찾기 어려우며 이는 각 국가별로 다른 형태의 미디어랩 제도운영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자체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나, 일본과 같이 대형 광고에이

전시에 의해 독과점으로 수행되는 광고판매에 있어서는 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회계적인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같이 공민영방송이 혼재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회계에 대한 정보가 일부 취득 가능하였다. 미디어렐이 국가가 채택한 방송체제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한 다고 볼 때, 방송에 대한 회계제도의 중점적 검토를 통하여 미디어렐 회계제도의 골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제도 및 미디어렐의 재무, 회계보고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III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은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인 기준(고시)안을 도출된 결과를 논의한다. 기준안의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해외 및 국내 법제도 및 규제사례를 검토, 규제당국과의 논의 등을 통해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정의한 후 필요정보를 도출하는 Top-Down과 기존 사업자의 현황(KOBACO),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및 사업자 실무가 포함된 전담반 회의, 현장방문, 회계시스템 관련 설명 청취, 사업자의 외부 재무보고, 계정분석 등을 통한 현황 파악 및 신규 사업자의 운영범위 등에 대한 예측 등을 통해 Bottom-Up으로 정의된 회계정보를 대응하는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완결성 및 충분성과 함께 제도도입 및 운영과 사업자보고의 수월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기준(고시)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재무제표, 제3장 재무상태표, 제4장 포괄손익계산서, 제5장 보칙 및 부칙과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각 장 및 보칙과 부칙에 대하여 조문별로 조문의 내용과 조문의 근거내지는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별지서식으로는 제1호 재무상태표, 제2호 포괄손익계산서, 제3호 현금흐름표, 제4호 사업부문명세서, 제5-1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매출액명세서_방송사업자별, 제5-2호 방송광고판매대행매출액명세서_광고주별, 제5-3호 연계판매 매출액명세서, 제6호 주주현황 및 변동명세서를 규정하고 있어, 규제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에 대한 수요를 기준을 통해 충족가능하게 하였다. 그 밖에도 교차판매나, 지역별 영업현황, 위탁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는 필요 시 별도의 명세서를 구성하여 고

시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나 명세서의 서식(안)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되는 민영미디어랩에 대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회계정리 및 보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 목표 정의 → 정책정보수요 규명 → 필요 회계정보 정의 → 회계정리 및 보고에 대한 기준으로 이어지는 틀에 충실하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틀(framework)을 통해 연구의 체계성 및 본 연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보고되는 회계정보의 완결성 및 충분성 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규제당국 및 사업자가 참석하는 전담반 회의, 현 사업자의 회계시스템, 외부보고, 연차보고, 사용계정 등을 분석하고, 규제목적으로부터 정의된 회계자료와 상호 대응함으로써 규제운영 및 규제보고의 수월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일정 한계로 작용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KOBACO의 경우, 외부목적 재무보고를 수행하고 있어 사용 계정이나 회계처리방법 등이 이미 기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미디어랩법의 도입 이후에 법제도 및 공기업의 운영행태에 따른 규제당국의 방향에 따라 운영행태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에 대한 공영미디어랩의 운영 방식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영미디어랩의 경우, 향후 발생가능하거나 허용될 수 있는 신규진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운영행태나 영업범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이 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에 대한 규제정보 수요충족에 초점을 둬으로써 타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여 고시(안)를 정리하였다. 또한 확정된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고시(안)를 확장하고, 또한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수요를 고시(안)를 통해 충족시키는 데 충실함으로써 향후 미디어랩법의 추이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의 수행을 위

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로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산업의 규제회계제도를 위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한 결과물인 고시(안)는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K-IFRS)을 고려하여 관련 재무제표 및 구성항목을 정의한 최초의 고시(안)으로 향후 제반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등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I .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

미디어랩(Media Rep: Media Representative)이란 특정 매체사와의 계약 하에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방송사와 광고주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다양한 역기능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판매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 국가독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이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에, 1999년 말 통과된 통합방송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랩을 설치하여,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도입하고,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위하여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랩에 대한 방송사 출자의 금지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민영 미디어랩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신문사,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2008년 다시 민영미디어랩의 도입이 재추진되고, 마침내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과 함께 2009년 말까지 이를 해소할 것을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KOBACO의 독점적 판매행위는 판매대행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작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⑤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09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KOBACO에 의한 독점적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는 다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시장기능과 무관한 요금 및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으로 인식되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헌법소원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정에 의해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민영미디어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¹⁾

민영 미디어랩 등장 등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 규제측면에서는 경쟁도입에 따른 규제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제반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는 특히, 경쟁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 기초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정보를 규명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송광고판매 대행산업에 대한 경쟁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요 및 내역을 규명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회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의 확보, 사업자간 공정경쟁, 광고시장의 활성화, 중소방송지원(취약매체지원), 방송발전기금 산정기반의 확보 등을 위해 공·민영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정리(처리) 및 보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인 계획 및 수행을 위한 규제정보수요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기준(고시)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였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정보는 방송광고 판매정책의 사후 규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된다. 회계자료의 제출은 방송법 개정안 제73조의5(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²⁾ 특히 제73조의5의 ②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영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73조의5의 ③은 관련 회계자료

1) 2006년 태평양커뮤니케이션이 위헌 헌법소원 제출. 2008년 11월 27일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불일치 판정.

2) 방송법 제73조의5(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광고판매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배분한 광고요금의 배분기준과 내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고판매회사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광고판매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의 검증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방송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고시의 기초(안)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되는 민영미디어랩에 대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회계정리 및 보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 목표 정의 → 정책정보수요 규명 → 필요 회계정보 정의 → 회계정리 및 보고에 대한 기준으로 이어지는 틀에 충실하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틀(framework)은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통해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완결성 및 충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이 되며 연구에 체계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미디어랩 관련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입법논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규제당국(방송통신위원회) 및 기존 사업자인 KOBACO 회계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회의를 통해 규제요소 및 규제보고의 필요, 가능 내용을 파악하여,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규제목적 및 회계정보의 속성, 범위, 양식 및 지표 등을 검토함으로써, 연구목적 달성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곧 시행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회계정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고시(안)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관련된 규제수행의 수월성과 보고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규제보고 수월성을 중요한 관점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일정 한계로 작용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KOBACO의 경우, 외부목적 재무보고를 수행하고 있어 사용 계정이나 회계처리방법 등이 이미 기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미디어랩법의 도입 이후에 법제도 및 공기업의 운영행태에 따른 규제당국의 방향에 따라 운영행태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에 대한 공영미디어랩의 운영 방식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영미디어랩의 경우, 향후 발생가능하거나 허용될 수 있는 신규진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운영행태나 영업범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이 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에 대한 규제정보 수요충족에

초점을 둠으로써 타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여 고시(안)을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디어랩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고시(안)이 확정된 법안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고시(안)을 확장하고 또한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수요를 고시(안)을 통해 충족시키는 데 충실함으로써 향후 미디어랩법의 추이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의 수행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로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산업의 규제회계제도를 위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한 결과물인 고시(안)은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K-IFRS)을 고려하여 관련 재무제표 및 구성항목을 정의한 최초의 고시(안)으로 향후 제반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등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II 방송 및 방송광고판매 제도현황

1. 방송광고판매제도 제도현황

1) 해외 방송광고판매 제도

해외의 경우, 방송관련 법제도 및 공공방송과 민영방송의 방송체제는 물론, 광고에 대한 규제가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가진다. 특히 미디어렐이 다루는 상품인 광고는 방송광고시간에 대한 거래이며, 미디어렐은 이러한 광고시간에 대한 거래를 대행,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렐의 성격은 각 국가의 방송체제의 성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즉, 공영방송체제인지 상업방송체제인지 따라 다르며, 또한 공영방송의 경우 재원의 조달방식에 대한 개별 국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미디어렐 관련 제도가 상이하다. 즉, 국가별로 다른 양상의 미디어렐 운용현황은 광고판매가 단순히 광고시장으로서의 발전하기 보다는 방송체제의 일부로서 국가가 채택한 방송광고정책의 산물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회계정리 및 보고의 지침 역시 국가의 정책방향 및 정책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규제회계보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방송체제와 관련된 미디어렐 운영현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필요한 규제목적의 정의를 위해서도, 각국의 방송체제에 따른 미디어렐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2004) 및 박현수(2008)의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영과 민영의 방송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국가들의 미디어렐 제도현황을 살펴보고, 상업방송체제의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 영국의 경우, 1927년 BBC가 공영방송으로 전환되었고, 첫 민영방송인 ITV는 타 대륙국가 비해 2~30년 빠른 1955년 출범되었다. 이때부터 영국은 수신료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체제로 발전하여 왔다. 미디어렐은 민영방송에서 먼저 출발하여, 공영 또는 국영방송에 방송광고가 허용되면서 공영 미디어렐을 시작한 다른 많은 국가들에 차이를 가진다. BBC는 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타 공영(Channel 4 등)은 자체 판매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민영방송의 광고를 판매하는 미디어렐은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ITV는 케이블TV, 위성TV 등의 뉴미디어 등장 이후 산업적인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소유구조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였는데, 미디어렐 역시 단일의 ITV Sales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방송과 광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뉴미디어 등장에 따른 지상파 독점구조 붕괴와 이에 따른 지상파 광고규제를 완화를 의미하며, 영국정부의 지상파 산업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Carlton Media Sales, Granada Enterprises 등의 미디어렐이 있다.

- 프랑스의 경우, 1968년 국영방송체제로 시작하여 방송사의 지나친 상업화 경향을 예방하고 언론 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공영 미디어렐인 프랑스광고공사(RFP)가 설립되었다. 이후 1974년 국영방송사가 해체되고 그 산하의 3개 방송사가 각각 분할되고, RFP와 각기 독립도니 국영방송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각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담당하는 미디어렐을 설립함으로써 공영미디어렐 간에 제한적인 경쟁이 도입되었다.

이후 1984 민영 TV 채널의 허용과 함께 민영미디어렐이 도입되어 광고 판매시장에 독점이 도입되었다. 공영 4개 민영 3개의 채널을 바탕으로 공영과 민영 미디어렐 경쟁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공영 미디어렐 체계로 출발하여, 공영 간의 경쟁체제를 거쳐 현재는 공영, 민영 미디어렐이 합

게 존재하며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랩은 공영, 민영 모두 방송사가 속한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송발전기금징수와 같이, 민영 미디어랩의 경우에도, TV 광고에 한해 특별 분담금이 부과되고, 이를 통해 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매체(인쇄매체 및 라디오 등)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민영미디어랩으로는 TF1, F2/F3/F5, Canal+, M6 등의 민영미디어랩이 있으며, FTP가 공영미디어랩으로써 TV채널 뿐 아니라 케이블과 공영 TV 채널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도 판매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다 1984년에 들어서야 민영방송이 출범하였다. 민영방송의 당시 전송로는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공영과 민영이 전송로부터 구분되는 형태를 보인다. 독일은 공영의 경우 공익성의 강한 강조 기조 하에, 광고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광고시장의 경쟁은 민영을 중심으로 발생함. 현재 공영은 공영미디어랩, 민영은 민영 미디어랩이 담당함. 민영미디어랩은 방송사 또는 방송사 소속 그룹의 자회사 형태로 존재한다.

독일 방송규제 상 주목할 점으로는 지분소유제한 및 시청률 제한방식을 통해 민영방송에 있어서의 독과점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영미디어랩으로는 ARD-Werbung Sales & Services 및 ZDF-Werbefrensehen, 민영미디어랩으로는 SevenOne Media, IP Deutschland, El Cartel 등이 시장을 과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일본방송협회인 NHK와 NHK 및 방송대학학원 이외의 방송사업자인 일반방송사업자로 구분된다. 1950년 시행된 방송법에 의해 특수 법인화된 공영방송 NHK와 다수의 민영방송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광고의 판매영업을 직접수행하고 있으며 대형 광고회사들이 미디어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덴쯔,

하쿠호도 등의 대형 광고에이전시들의 광고점유율이 70%를 차지하는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상업적인 민영방송체제로 전체 1,500여개 이상의 TV 방송국 중 약 70%가 상업 방송국으로 추산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초기에는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1984년 이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재원을 모금, 기업협찬 등에 의존한다. 민영방송의 경우, 방송국 시청권역 내에서의 지역광고(local spot 광고) 및 일부 네트워크의 광고는 방송국 자체 영업조직에 수행되는 형태를 보인다. 전국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광고(national spot 광고) 및 복수의 지방을 묶어 판매하는 지방광고(regional spot 광고)는 판매대행계약을 통해 판매된다. 판매대행사는 광고회사의 매체구매 담당자를 주요 고객으로 광고를 판매한다. 현재는 3개의 대형 미디어렐사가 전체 방송국의 60%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미디어렐 체계의 특징은 상업방송 위주의 미국 방송체제 하에서 광고를 기업 영리활동의 부분으로 간주하고 공공정책 상의 규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U(European Union) 국가의 경우, 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각각의 미디어렐이 존재하는 형태를 보인다. 반면 상업방송 위주의 방송시장을 갖는 미국의 경우, 각각의 민영 상업방송이 직접 판매영업을 하는 광고형태와 소수의 대형 광고에이전시가 판매대행을 하는 광고형태가 혼재된 체제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대형 광고에이전시들에 의한 독과점적인 광고판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 국내 방송광고판매 제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1980년 12월 공포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국내 방송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렐(KOBACO)에 의한 독점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KOBACO 설립이후 최근의 위헌 까지 제도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1> 국내 방송광고판매제도 관련 주요내용

시기	내용
1980.12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공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1년 1월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으로써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체계의 정립, 공익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그 내용으로 함.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방송광고)에는 '국내 각 방송국은 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20조(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 등)에는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있다. 이는 방송광고의 독점영업권의 특혜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음.
1995. 7	- 공보처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에서 방송광고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방송광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자는 안을 제시. 90년대부터 시작된 경쟁도입논의를 반영.
1998. 2	-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방송광고판매 자유경쟁체제도입에 합의함. 기획예산처도 1998년 8월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를 2000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판매대행사에 대하여는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한자는 의견을 제시.

시기	내용
1999. 2	-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에 ① 2000년부터 민영 미디어렐의 신규시장 진출 허용을 통한 공·민영 미디어렐 2개사 간의 방송광고 영업에서의 제한 경쟁 도입 ② 제한적 경쟁에 따른 방송광고의 제한적 시장가격 반영, ③ 공영 미디어렐은 공영방송 대행, 민영 미디어렐은 민영방송 대행, ④ 2001년 이후 한국방송공사 광고폐지와 문화방송 민영화 추이를 감안해 공민영 미디어렐의 영업영역 구분폐지, ⑤ 방송사 매출규모에 따른 수탁수수료 차등 적용 권장 등을 제시.
2000. 8	- 문화관광부는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민영미디어렐 신설 및 소유 구조 등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00. 9	-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법률제정안에 대한 내부검토의견서 제출을 통해 정부 방송광고정책 미흡 지적 재검토 요청함. KOBACO의 미디어렐 지분 30% 취득은 독점체제 유지의 편법이며 방송개혁위원회의 결정과 배치한다고 삭제요구.
2000. 10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제도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대체안 마련
2000. 11	- 규제개혁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12월 최종의결 계획. 민영미디어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동년 12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해 미디어렐 2개 이상 허가를 문화관광부에 권고하기로 결정. 방송광고판매자 허가제(2년 기한), 방송사 출자지분 20% 이내 제한, 대기업/신문사/통신사 출자금지를 골자로 함.
2001. 1	- 문화관광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안’의 규제심사 결정에 반발. 수정안 마련 재심의 요청. 향후 규개위와 문광부의 입장차이로 유보.
2004. 8	- 한국미디어렐 KOBACO와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방송법에 따라 KOBACO의 출자를 요청하였으나 출자불가로 결정
2005. 3	- 국무총리실 KOBACO 독점해소를 참여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결정
2005. 4~ 2005. 8	- 문화관광부 제도개선 T/F 구성. KOBACO 독점해소 방안 협의. 법안 유보

시기	내용
2005. 9	- 규제개혁기획단 광고제도 개선계획 1차 발표. 끼워팔기, 사전심의, 수수료제도 및 KOBACO 개선안을 문화관광부에 요청
2005. 10	- 국회 손봉숙의원 의원입법안 발의: 미디어랩을 완전경쟁체제로 운영 정병국의원 의원입법안 발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를 전제로한 대체입법안으로 KOBACO의 기능을 축소해 공영방송사업자의 광고만 대행
2006. 3	- 태평양 미디어앤드컴 KOBACO의 방송광고판매대행과 관련 현행 방송법이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이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
2007. 1	- 재정경제부 6차 한미FTA 협상 진행 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적 서비스 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및 안건 상정. 민영미디어랩 도입 및 방송광고 가격규제 폐지 등에 대한 논의
2007. 4	- 대통령 한미FTA 타결에 따른 KOBACO 폐지와 민영미디어랩 도입의 구도 가능성 제시. KOBACO는 시장왜곡 방지의무를 부여받음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통한 상대국 투자의 부정적 영향은 반경쟁적 행위로 금지됨. 이로써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에 의해 ‘비위반제소’의 적용을 받음
2007. 7	- 재정경제부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방안. KOBACO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꿈으로써 미디어랩 허용 방침
2007. 6 ~ 2007. 8	- 문화관광부 한미FTA 합의에 따라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경쟁체제 도입 법안 마련. 미디어랩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법률안
2007. 10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BACO 민영화 및 방송광고판매시장 논란. 민영미디어랩 신설 및 현행 방송광고판매영업에 경쟁체제 도입 필요 등에 관한 논의
2008. 8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통해 27개 우선과제를 도출.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논의.

시기	내용
2008. 8	-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 특별추진위원회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발표. 2~3차 선진화 방안에 KOBACO 해체와 민영미디어렐 도입 방안 마련 예정
2008. 9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및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개정안(12월) 개정 추진.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가상광고도입근거 마련, 방송광고판매대해 민영미디어렐 도입등 검토
2008. 10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통신위원회에서 제한경쟁시스템 도입 인정
2008. 11	- 헌법재판소 KOBACO 방송광고 판매대행 관련 헌법불일치(실제적 위헌) 결정
현재	국회에서 미디어법 관련 개정 준비 중

출처: 제도개선주요경과(KAA저널, 2008) 발췌·수정

2. 방송관련 회계제도

현재 미디어렐 관련 회계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 제73조의5(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에 의해 규정되고 있을 뿐, 제반 제도적인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제도 검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의 방송관련 회계제도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 관련 함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디어렐에 대한 회계제도의 자료는 매우 찾기 어려우며 이는 각 국가별로 다른 형태의 미디어렐 제도운영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자체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나, 일본과 같이 대형 광고에이전시에 의해 독과점으로 수행되는 광고판매에 있어서는 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회계적인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같이 공민영방송이 혼재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회계에 대한 정보가 일부 취득 가능하였다. 미디어렐이 국가가 채택한 방송체제에 따라 그 형

태를 달리한 다고 볼 때, 방송에 대한 회계제도의 중점적 검토를 통하여 미디어렐 회계제도의 골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제도 및 미디어렐의 재무, 회계보고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 해외 방송관련 회계제도

회계 및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EU는 EC 협정상에 공공방송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EC Directives(2001)를 제정하고 있어, 각 EU 국가의 공영방송은 재원을 수신료 등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EC Directive 6.4가 정부보조금의 투명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제60조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하며, 공공서비스 부문과 비공공서비스 부문을 명확하게 회계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분리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분리(Accounting Separation)는 사업자(기업)의 수익, 비용, 자산 등을 서비스/역무/채널/고객/BU(Business Unit)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³⁾ 특히 규제에 있어서는 규제의 초점이 되는 서비스나 역무에 대한 손익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회계분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즉, 요금정책을 위한 시내전화 및 무선 음성전화의 손익 및 수익률 정보 등의 확보). 따라서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회계분리는 사업자의 수익, 비용, 자산 등을 규제기관이 정한 서비스나 역무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통신에서는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43)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회계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분리는 통신이나 방송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규

3) '회계분리'란 서비스/채널/고객/사업부문 등에 대하여 수익/비용/자산 등을 구분하여 회계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회계, 부문별 보고(segmental reporting) 등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정보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규제를 위한 분리제도에서는 회계분리, 기능분리, 구조분리, 소유분리를 들 수 있는데, 소유분리가 가장 강한 강도의 규제라면, 회계분리는 가장 약한 강도의 규제수단으로 소유분리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소유분리/구조분리/기능분리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도 방송과 방송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규제의 초점이 되는 방송사업의 결과를 규제목적에 비추어 판단하기 위해 방송사업과 방송사업외의 사업의 결과를 회계분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EU 국가들의 대부분은 EC Directives에 따라 공영방송 내의 공공과 비공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회계분리하고 있다. BBC 경우, 공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부문은 전적으로 수신료에 의존하고, BBC World Service & BBC Monitoring은 정부보조금, BBC의 상업부문은 프로그램 및 기타자산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수신료재원은 공영방송부문의 경우에만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타 부문과 엄격하게 회계분리 된다. 특히 BBC의 경우, 수익, 비용 및 자산을 각각의 부문으로 나누어 회계분리하여 공표하고 있다.

반면에 위와 같은 방송에서의 공공과 비공공, 방송사업과 방송사업외의 회계분리는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일견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운영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배부(allocation) 기준을 정의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이러한 배부기준의 적합성에 따라 규제정보의 정확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면밀한 연구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에 EC는 2008년 EC Directive 재검토 자문 시 공통비 회계분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하였으며, 다각적인 검토 하에 기존의 회계분리 관련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즉 유럽의 경우, 회계분리의 비용이나 배부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회계분리가 재무적인 투명성 및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 등을 방지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계분리제도 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방송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NHK에 대하여 방송법에 근거하여 지출제한의무(제39조), 수지예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제출의무(제37조), 업무

보고서 제출의무(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선통신법(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 의한 유선방송의 경우에도 계약약관과 요금에 대한 신고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자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보고서에 해당하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제38조)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총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주무관청은 총무성이며 NHK의 회계관련 사항은 총무성령으로 제정하고 총무성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NHK가 총무성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사업개요, 방송프로그램의 개요 등의 사항과 자본상황, 차입처 및 차입금 상황, 재정투자, 융자자금, 교부금 상황 등의 재정상황 부분을 포함한다. 재정상황은 ‘자산, 부채 및 자본(대차대조표 또는 IFRS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손익 및 수지활동(손익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일본 NHK 규제회계의 특이점은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인에 의해 검증 받은(회계감사인의 의견서 첨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재무제표 등의 규제보고는 방송법시행규칙상의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보고되고 있다.

2) 국내 방송 및 방송광고판매 관련 회계제도

국내 방송 및 방송광고판매 관련 회계제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훈령으로 제정되어있는 방송사업자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8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 － 제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방송매출액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영업통계 등을 부속명세서로 규정함.
 - － 방송사업과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 간의 구분(회계분리를 명시)

- 재무제표의 자산, 수익, 비용 등의 항목을 방송사업에 적합하도록 정의
- 사업자 자체 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처리 및 외부구입 방송프로그램의 회계처리방법 규정
- 제출시기: 방송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기타 제출요건: 회계자료와 함께 감사보고서 제출(예외: 자산총액 70억 미만 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감사보고서 갈음)
- 회계자료의 관리, 유지/비치 의무
- 필요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
- 정보공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 공표

위의 방통위 훈령은 차후 ‘방송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시행령)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고시)로 정비하여 공표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이 정비되는 시행령 및 고시는 전파료 배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산정 마련 등을 위한 방송제작비명세서와 구성항목, 매체별, 채널별로 추가의 회계분리(직접분류 최대화의 원칙하에 직접분류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의 합리적 배부기준 선택에 따른 배부. 배부기준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분리지침서의 재출을 요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미디어랩에 관하여는 방송법 개정안 제73조의5(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에 회계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방송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 의무

방송법 제73조의5(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② 광고판매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배분한 광고요금의 배분기준과 내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고판매회사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광고판매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①은 자료제출 의무, ②는 제출시점, ③은 검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②는 회계분리와 관련하여 필요 시 배부기준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방송법은 공사의 경우,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할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방송법 제55조),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59조). 법 제59조②제1항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결산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방송발전기금에 관하여도 회계관련 의무가 발생한다. 방송법 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에 의한 발전기금은 제37조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한다. 징수되는 방송발전기

금의 규모는 방송광고매출액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제37조②는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홈쇼핑과 같은 상품소개와 판매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기금징수에 관한 사항 역시 포함하고 있다.

반면, 방송법 제37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현재 KOBACO 독점이므로 무의미함. 그러나 향후 민영미디어랩이 출범하고 기금의 징수가 지속적으로 미디어랩에 위탁, 징수될 경우, 근거조항이 될 수 있음). 실제 방송법 시행령은 제24조(기금관리의 위탁)에서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업무를 KOBACO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BACO는 매 분기마다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또한 방송통신위는 시행령 제22조(방송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하며, 징수에 필요한 위와 같은 기금관련 정책수행을 위해 공사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도 기금의 산정에 필요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와 함께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등에 회계관련 제반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디어랩의 경우, 기금징수의 위탁 등에 관련한 회계처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재무제표 상의 예수금계정 등).

III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

1. 개발방법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향후 도입되는 공민영 미디어랩간의 경쟁체제 하에 최초로 적용할 회계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이 되는 선행의 연구가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해외사례 역시 국가 간의 각기 다른 방송체제에서 파생된 미디어랩 규제체제의 상이성에 의해 벤치마킹 가능한 범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해외 및 국내 법제도 및 규제사례를 검토한 후, 미디어랩 경재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에 관한 분석을 통해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의하는 것을 첫 번째 절차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 따른 세부정책목표를 규명한 후, 필요한 규제회계정보의 내용/속성/범위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미디어랩법 도입을 통한 정책적 목표 → 세부 정책목표 → 회계 재무제표/양식/회계분리/지표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정책적 목표에서 top-down으로 회계지침을 구성하는 것으로 종료하여서는 충분성 및 완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근시일내에 도입될 방송광고판매사업자의 회계보고를 위한 지침에의 직접적인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따라서 도입 시의 규제측면에서의 활용성 및 보고 사업자의 보고를 위한 비용, 수월성 및 타당성의 측면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존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영업전반 및 회계시스템 전반의 파악하고, 향후 발생가능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신규진입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운영행태나 영업범위를 가정하여, bottom-up으로 보고 가능한 회계정보의 내용/범위/속성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체계



위와 같은 양방향(hybrid of top-down and bottom-up)적인 접근방법론은 자료의 완결성 및 충분성을 획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즉, 규제 정책적 목표로부터 top-down을 정의된 규제회계정보가 기존 사업자의 현황(KOBACO,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및 사업자 실무가 포함된 전담반 회의, 현장방문, 회계시스템 관련 설명 청취, 사업자의 외부 재무보고, 계정분석 등을 통한 현황 파악 및 신규 사업자의 운영범위 등에 대한 예측 등을 통해 bottom-up으로 정의된 회계정보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 규제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현재 제공 가능한 정보를 대응(matching)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달성/수행 가능한 회계정리 및 보고 지침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연계작업에서 대응(matching)되지 않는 회계정보는 미래 제공하여야만 할 정보를 재 정의하는 작업을 수반할 수 있다.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비용 대 효익(cost vs. benefit)을 바탕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과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달성 가능한 규제 효익을 비교, 분석하여야 하며, 규제당

국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실제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용 대 효익의 상세분석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관련 회계제도의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러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규제당국 및 연구자의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해 사업자와의 feed-back을 거친 후 규제당국과 최종검토 후 지침(고시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의 구성 및 연구결과의 도출에 있어서 고려할 측면은 규제의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통신과 방송은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독립된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방송은 지상파, 위성 등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 보유여부 및 역무기준에 따라 사업을 분류·규제한다. 그러나 산업간 경쟁이 보편화되는 융합시장에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별로 구축된 기존의 수직적 규제는 유사서비스에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규제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수준/범위/내용의 규제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방송, 통신의 영역을 전송과 콘텐츠 계층으로 수평적으로 구분하고 전송과 콘텐츠의 규제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당국에는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 수평적 규제와 수직적 규제 간의 선택이 본 연구의 기본목적은 아닐 것이나, 수평적 규제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산출 및 보고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방송사업에 대하여도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이 발령되어 있고, 본 연구는 방송산업과 분리될 수 없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정보육구의 충족 외에도 수평적 규제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수평적인 규제에 있어서나, 수직적인 규제에 있어서나, 회계정보는 경쟁평가, 산업진흥, 자원확보, 정책입안정보 및 정책수행결과의 평가정보의 제공 등 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회계와 같은 수준의 회계정보는 아닐지라도 미디어렐에 대한 회계정보는 미디어렐의 재무적 투명성 확보, 공정경쟁유도, 경쟁활성화, 산업진흥,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기반 확보, 중소(취약)매체지원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

보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정리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

1) 기준의 구성

본 연구에 의한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표 3>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의 구성

구분	구성	주요내용
제1장	총칙 (1조~4조)	목적 적용대상 용어의 정의 회계의 기본원칙
제2장	재무제표 (5조~7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의 구분 계정의 구분
제3장	재무상태표 (8조~41조)	유형자산 분류 : 기타유동부채의 분류
제4장	포괄손익계산서 (42조~53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수익 분류 : 총포괄손익
제5장	보칙 (54조~58조)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부칙	시행시점 등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를 정의, 제시

위와 같이 구성된 본 연구의 기준(고시안)은 일반적인 타 고시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기준이 차년도 도입예정인 K-IFRS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미디어법이 금번 회기 내에 통과된다고 가정하여도 본 고시(안)에 의한 최초보고는 2012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IFRS가 도입된 이후의 시점에 첫 보고가 이루어지고, 보고대상 사업자인 공·민영 미디어랩은 K-IFRS의 도입을 통해 K-IFRS 회계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KOBACO도 현재 K-IFRS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만일 과거의 KGAAP에 의해 고시(안)이 작성될 경우, KOBACO는 이중의 회계처리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새로이 출범되는 민영미디어랩의 경우, K-IFRS 회계처리시스템 외에도 추가로, 사용하지 않을 과거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 낭비 및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 후에 시행될 고시에 대한 (안)으로, 제출되는 재무제표도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명명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계정도 K-IFRS 하의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시에서 정의하지 않아도 될 일반적인 항목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에는 정의에 대한 혼란 및 오용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K-IFRS의 계정에 대한 정의 및 재무제표의 구성/표시방법이 현재의 기준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고되는 재무제표 항목의 대분류 및 소분류 항목 모두에 대하여 K-IFRS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도입하여 기준(고시안) 내에 모두 담는 방향으로 하였고, 그 결과 타 고시에 비하여 더 많은 분량 및 조문을 담고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정의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IFRS, 도입자문단의 공기업 K-IFRS (비금융) 재무제표 (표준-안)을 사용하였다.

또한 관련 법 개정예에 대비하여 향후 확정되는 안에 맞추어 수정, 사용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향후 확정되는 법안에서 발생 가능한 세부 정책목표에서의 변동이나,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의 의무상의 변동을 고려하여 명세서 같은 내용도 향후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명세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교차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시 교차판매에 관한 명세서는 필요치 않을 수 있다.

2) 기준의 내용과 근거

① 제1장 총칙

기준의 제1장 총칙의 세부내용과 근거 및 타당성/필요성은 조문별로 나누어 표의 형식을 통하여 설명한다.

<표 4> 제1장 총칙의 구성과 구성근거 및 필요성

제1장 총칙			
구분	조문	근거/타당성/필요성	비고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73조의5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준의 목적을 제시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사업자가 「방송법」 제7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본 기준의 적용대상을 정의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발기금의 징수위탁에 관련된 회계보고의 무가 지정될 경우, 제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본 기준의 목적을 경쟁현황파악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별도로) 포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제1장 총칙			
구분	조문	내용/타당성/근거	비고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3의 방송사업자의 광고를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차판매”라 함은 공영사업자가 민영방송사업자의 광고를 판매대행하거나 민영사업자가 공영방송사업자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계판매”라 함은 서로 다른 방송사업자의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회계분리”란 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할당”이란 자산등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배부”란 자산등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접비(자산)”란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공통비(자산)”란 2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판매사업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고 있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교차판매 등에 대한 한시적 금지등의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 3. 연계판매에 대한 현황 정보획득은 중소매체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함. 이에 정의를 포함함. 4.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 간의 회계분리가 필요함.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분하여 규제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전기통신회계제도 및 현재 진행 중인 방송(사업자)회계제도 고시안과 동일하게 “회계분리”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이에 정의를 고시(안) 내에 포함시킴 5. 6. 회계분리와 관련하여 직접비와 공통비의 정의를 포함함.	교차판매의 정의는 향후 확정되는 법안에 따라 불필요할 수도 있음. 또한 교차판매는 일반적인 크로스미디어렐과 혼란이 있을 수 있음. 교차판매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민영 교차판매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함.

제1장 총칙			
구분	조문	내용/타당성/근거	비고
제4조 (기본원칙)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정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항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기준에서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천명 ① 신뢰성의 기본원칙과 회계기록 유지의무를 천명하고, 검증에 관한 사항을 삽입. 검증 없이는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불가능함. 정책이 잘못된 정책에 의해 수행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함. ②계속성의 기본원칙 ③일반적인 고시 조문	

제3조의 교차판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안이 확정되는 형태에 따라서 불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마케팅 상의 크로스미디어와 혼동이 될 수 있다. 크로스미디어란 하나의 광고 캠페인에 다양한 매체 패키지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동종매체 간의 결합, 이종매체 간의 결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을 총칭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동종매체 간의 결합은 말 그대로 KBS1과 KBS2 채널에 같은 광고주의 광고캠페인을 광고하거나 여러 지역 TV를 묶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며, 위 기준 상의 용어로는 ‘연계판매’의 개념이다. 이종매체 간의 결합은 TV와 케이블, 라디오와 인터넷, 인터넷과 잡지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매체에 함께 광고하는 것이다. 현재 언론 상의 논의는 이러한 이종매체 간의 결합판매를 교차판매로 언급하고 있다. 교차판매의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정의상의 문제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차후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통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위 기준 상의 교차판매는 공영미디어법이 민영방송

의 광고를 판매하고, 민영미디어랩이 공영방송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선의 방지를 위해서는 공·민영 교차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준 제1장에서 합병에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회계와는 달리 합병관련 하여 특별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효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기업 회계기준 상의 연결회계준칙이 근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되는 K-IRFS의 경우, 연결에 따른 재무보고를 수행하기 때문에 합병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가입자 기반 등 영업권 등에 인수, 양도에 따른 통신원가인정의 문제가 발생하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 허가 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다른 허가 받은 사업자의 자산등을 양수도하는 경우는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일반적인 연결 및 합병회계에 따르면 되고, 규제의 대상(또는 초점)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회계분리되므로 별도의 조문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은 ‘사업자간에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피합병사업자의 재무제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2장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제2장 재무제표의 세부내용과 그 근거/타당성/필요성도 조문별로 나누어 표의 형식을 통하여 설명한다.

<표 5> 제2장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의 구성과 구성근거 및 필요성

제2장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구분	조문	근거/타당성/필요성	비고
제5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연계판매매출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명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방통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규정하고 제시된 양식을 따라 작성할 것을 명시	방송사업자 관련 고시(안)이나 일본의 경우도 NHK에 대해 동일한 형태로 진행
제6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구분)	① 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자산등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의 자산등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축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할당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한다.	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은 회계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③ 공통자산등의 인위적 배부를 지양하고 직접할당의 원칙하에 직접할당이 어려울 경우에만 적절할 배부기준을 통한 배부를 허용함.	②에 있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의 수익만큼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비용으로 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수익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사업간 공통수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활용가능한 방법임. 단, 회계분리 및 배부기준에 대하여 추가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및 검토를 통해 보완가능할 것임. 제54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및 제58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보완을 통해 배부기준의 적정성 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제6조②에 있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의 수익만큼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비용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며 타 제반법령에서 고려한 바 있다. 이 경우, 미디어랩 본연의 사업외의 사업이익은 고려치 않는 방법으로, 본연의 사업위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호보조 등의 논란이 가능하다. 단, 비중이 크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는 큰 오류가 아니며 적용가능한 방법이다. 현재 KOBACO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차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인과관계에 따라 회계분리한 결과에 비해 정보의 질적인 하락이 우려된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수익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사업간 공통수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을 사업 간의 수익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된다. 이 경우 부담능력기준에 의한 배부원칙이 적용되어 인과관계기준에 비해 미흡하나 인과관계에 의한 배부기준의 설정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수익비율배부는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산출이 가능하도록, 직접할당 최대화의 원칙하에 공통비에 대한 배부기준을 사업환경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업자 자신이 제시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회계분리 및 배부기준에 대하여 추가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배부기준을 포함하는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및 이를 회계전문위원회(또는 방통위 담당)의 검토를 통해 회계분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보칙의 제54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및 제58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보완을 통해 배부기준의 적정성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2장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구분	조문	근거/타당성/필요성	비고
제7조 (계정의 구분)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앞의 제1장4의 기본원칙 내에서 일정 수용가능하나 본 기준에 의해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정의된 과목을 따라 정리할 것을 요구함. 공·민영 간의 비교 등을 통해 정책정보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반면 정의되어있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예외조항을 삽입함.	

또한 회계분리 상에 자산의 회계분리의 목적이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미디어랩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은 광고판매대행으로 통신과 같은 설비·장치산업이 아니고 방송과 같이 전송에 관련된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계분리는 수익과 비용에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제6조①은 ‘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수익과 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한다’로 변경하고, 제6조②의 공통자산은 삭제한다(제1장의 용어정리 부분에서 “자산등”으로 표시한 부분은 회계분리의 일반적 정의이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능하나, 본 기준 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등”을 “수익 및 비용”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제3장 재무상태표

제3장 재무상태표 및 제4장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내역과 정의는 분량을 고려하여 표 형식 보다는 각 조의 항별로 별도로 나열하고 필요한 개념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8조(유형자산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토지 :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단, 철도차량은 별도의 계정으로 표시한다.
5. 공구와 비품 : 사무용품, 공구 및 비품 등으로 한다.
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7. 기타의 유형자산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유형자산의 분류는 현 KOBACO의 사용계정과 동일하며,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K-IFRS(비금융) 재무제표 (표준-안) (이하 “표준안”)과 차이가 없다. 표준안은 유형자산에 선박, 전산설비, 금융리스자산 등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디어랩 운영 상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구분에 따른 규제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영의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사용 여부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으나 역시 구분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 시, 기타의 유형자산에 묶어서 보고하도록 한다.

제9조(무형자산 분류)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발비 : 신진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3. 기타무형자산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유형자산의 분류는 현 KOBACO의 사용계정이나, 표준안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KOBACO의 경우, 영업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개발중인자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금액적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민영미디어랩의 경우에도 미디어랩의 특성 상 영업시스템의 규모나 복잡성이 크지 않아 별도 기재를 요하는 중대한 항목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대항목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KOBACO의 외부보고를 고려하고 향후 시스템의 추가개발 여지 등을 고려하여 개발비, 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으로 구분하였다.

제10조(투자부동산의 분류) 투자부동산 :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투자부동산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로 구분 표시되며, 표준안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자산이 회계분리될 경우, 부속명세서 상의 자산항목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산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자산의 대항목으로 구분한 후, 투자부동산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자산으로 기재한다.

제11조(장기성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분류) 장기성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제외)으

로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2. 장기대여금 : 일반적 상거래와는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서 회수기한이 대차대조표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3. 부도어음 : 부도어음으로 한다.
4. 보증금 : 전세권 · 전신회화가입권 ·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기타의 수취채권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수취채권으로 한다.

KOBACO의 경우, 비유동자산 하의 투자자산에 매도가능증권 및 장금금융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IFRS 표준안과 같이 매도가능증권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고 장기금융상품은 장기성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구분한다. 표준안의 경우, 장기미수금, 장기미수수익, 장기성매출채권 등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미디어랩의 운영주기 및 형태 등을 고려할 경우,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별도 구분하지 않았다. 금액적으로 큰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기타의 장기성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이연법인세자산)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 및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말한다.

제13조(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으로 1년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를 말한다.

앞서 제11조(장기성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에서의 논의와 같이,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제14조(만기보유금융자산) 취득당시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단, 매도가 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앞서 제11조(장기성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및 제13조에서의 논의와 같이,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제15조(기타의 금융자산) 제13조 및 제14조에 속하지 않는 장기성 금융자산으로 한다.

제16조(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각조에 속하지 않은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선급금, 장기선급비용 등과 같은 금액들의 합으로 한다.

제17조(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으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을 의미한다.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역시, 자산을 회계분리할 경우,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8조(재고자산의 분류) 재고자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저장품 : 소모품 · 소모공구기구비품 · 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단,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표준안은 재고자산에 관하여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다양한 세부계정을 나열하고 있으나 미디어렙의 경우 상품매매가 아닌 판매대행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 KOBACO가 재고자산으로 저장품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으나 그 금액적 크기가 크지 않아 재고자산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가능하다.

제19조(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분류)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제외)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3. 대손충당금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잔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5. 미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6.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1년 이내에 수취할 금액으로 한다.

표준안의 단기대여금, 보증금(유동성)은 발생가능성이 적거나 없는 것으

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2.매출채권 및 3.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대조계정이므로 세부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차감형태로(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이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별도의 주석이 첨부되지 않고 주어진 별지서식에 따라 보고하므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대손충당금의 크기를 판단하는 데 용이함).

제20조(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 목적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포함)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한다.

현재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명칭을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함.

제21조(유동성 매도가능 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으로 1년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 예정인 경우로 한다.

현재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명칭을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함.

제22조(유동성 만기보유 금융자산) 취득당시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자산으로 한다. 단, 당기손익인식항목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의 명칭을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함.

제23조(기타의 금융자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속하지 않는 단기성 금융 자산으로 한다.

제24조(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등 통화 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로 한다. 단기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기타 유동자산) 유동자산 각조에 속하지 않은 유동자산으로서 선급금, 선급비용, 당기법인세자산 등과 같은 금액들의 합으로 한다.

제26조(자본금 분류) 자본금은 납입자본 또는 정부지분자본금, 비정부지분자본금 및 기본재산의 합계로 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자본의 대분류로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그 세분류 항목의 구분 및 통합표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K-IFRS 기준서에서는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자본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다. 표준안의 경우, 비금융권 공기업에 대한 표준안으로서 공기업에만 발생할 정부지분자본금, 비정부지분자본금 및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비정부지분자본금의 발생여부 역시 법안과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정해질 사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른 분류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주현황 및 지분변동명세서(별지서식 제6호)를 통해 자본금의 세부 내역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대분류로 하고 필요할 경

우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27조(자본잉여금의 분류) 자본잉여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타의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재평가적립금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자기주식처분이익 및 기타의 자본잉여금 등의 합계로 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재평가적립금,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으로 구성되는데, 민영미디어랩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관련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의 자본잉여금으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28조(자기주식)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민영미디어랩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자기주식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제29조(이익잉여금 분류) 이익잉여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의적립금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된 준비금 등으로 한다.
2.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처분전 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 결손금.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손익을 포함한다.
3. 기타의 이익잉여금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표준안에 따른 이익잉여금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KOBACO도 임의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의 두 가지 항목을 사용하고 있으

나 기타의 이익잉여금 항목을 추가하였다. 제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0조(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각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서, 주식할인 발행차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지분법자본변동, 재평가차익 등과 같은 항목의 합계로 한다.

기타 자본구성요소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민영 모두 금액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미디어랩 운영의 주요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단, 민영미디어랩의 경우, 향후 지분법적용 자회사의 설립, 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경우, 금액적인 중요성을 보일 수도 있으나, 미디어랩의 일반적인 상거래(또는 운영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합산하여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31조(차입금 분류) 차입금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차입금 :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제32조(퇴직급여부채) 퇴직급여채무, 국민연금전환금,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등의 합으로 한다.

제33조(장기성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장기임대보증금 등의 합으로 한다.

장기성매입채무는 미디어랩 영업주기(cycle)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항목은 아니나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임대보증금 등과 함께 합

산하여 보고한다.

제34조(이연법인세부채)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로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즉,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으로 한다.

제35조(비유동금융부채 분류) 비유동금융부채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채 : 1년 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한다.
2. 사채발행차금 : 사채발행 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으로 한다.
3. 전환사채 :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 유가증권의 소유자에게 발행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한다.
5. 금융리스부채 :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계상하는 부채로, 보고기간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상환될 금액,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민영미디어랩의 장기 자금조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유동부채를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제36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각조에 속하지 않은 비유동부채로서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선수금, 장기에수금, 장기선수수익 등으로 함으로 한다.

기타의 비유동부채를 합계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37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분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서 보고기간 이후 1년(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상환을 통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 :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무 중 보고기간말 현재 미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 :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인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유동부채의 구분은 KOBACO 및 표준안의 구분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다.

제38조(충당부채 분류) 단기충당부채 :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부채로 한다.

KOBACO는 충당부채(또는 장기성 충당부채) 항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표준안에 따라 별도 구분하도록 한다.

제39조(금융부채 분류)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유동성장기부채, 금융리스부채 등의 합으로 한다.

제40조(당기법인세부채 분류)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제41조(기타유동부채 분류) 기타유동부채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미지급비용 :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으로 한다.
2. 선수금 :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3.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하며, 방송발 전기금의 위탁징수에 따른 예수금을 포함한다.
4. 예수부가세: 위 3호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예수하는 부가세로 한다.
5. 선수수익 : 이미 수취한 수익 중 차기 이후에 귀속될 수익으로 한다.
6. 기타의 기타유동부채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방송발전기금의 위탁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예수금을 별도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수부가세는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수금 항목은 그대로 두되, 기준의 정의 중 방송발전기금의 위탁징수에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4장 포괄손익계산서

제4장 포괄손익계산서 역시 제3장의 재무상표와 동일하게 각 조의 항별로 별도로 나열하고 필요한 개념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42조(사업수익의 분류) 사업수익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수익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한 수수료수익으로 한다.
2. 기타수익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수익으로 대손충당금환입, 외화환산이익, 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기타 사업수익의 합으로 한다.

미디어랩의 일반적인 상거래 활동에 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수익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수익과 구분하도록 한다. (전기통신회계의 ‘전기통신사업외의사업’에 대한 구분과 동일)

또한 기타수익은 광고판매대행의 본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충당금의 환입등을 합산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금액적 중요성이 클

경우, 별도로 구분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KOBACO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임대수익 항목 등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으로 회계분리하여 관련 직접비 및 배부받은 공통비와 함께 구분표시하도록 한다(법인세효과후). 반면, 기타수익으로 구분되는 항목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영업자산의 처분 등의 경우 기타수익으로 보고한다.

제43조(사업비용의 분류) 사업비용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대행수수료 : 방송광고위탁대행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2. 기타사업비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비용으로 기타의 대손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업무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한다.

KOBACO는 위탁대행수수료를 별도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비해 수수료 규모를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44조(판매비와 관리비의 분류) 판매비 분류는 판매비 이외의 경영전반에 관한 관리비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원급여 : 임원(비주주)에 대한 정기급여로 한다.
2. 급여와 수당 : 종업원에 대한 정기급여 및 임금(직책수당 포함) 종업원에 대한 상여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등 제수당과 임원상여금(임원은 필요에 따라 과목을 개별계정에 구분 표시)으로 한다.
3. 퇴직급여 : 장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설정하거나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납부시 인식하는 비용으로 한다.
4. 기타의 인건비 : 전 1호, 2호 및 3호의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건비로 한다.
5. 복리후생비 :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액, 급식비, 체육비, 연성회비, 산재보험 등. 급여성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6. 여비교통비 : 국내외 여비와 교통비로 한다.

7. 통신비 : 전신료, 전화료, 우표대, 텔렉스료 등으로 한다.
8. 전력 및 수도료 : 동력 및 전등용의 전기료, 수도료로 한다.
9. 연료유지비 : 각종 유류대 및 보일러등 난방용 연료대로 한다.
10. 세금과 공과 :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각종 공과금으로 한다.
11. 소모품비 :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잡품 및 사무용 문방구에 대한 경비로 한다.
12.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으로 한다.
13. 도서인쇄비 : 신문·통신구독료, 도서구입비와 인쇄비로 한다.
14. 지급임차료 : 토지·건물 및 기타의 임차료로 한다.
15.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로 한다.
16. 무형자산상각비 :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로 한다.
17. 수선유지비 : 건물 및 부속설비, 비품 등의 수선유지비로 한다.
18. 차량비 : 자동차 기타 차량의 유지비, 유류대, 소모품비, 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으로 한다.
19. 보험료 : 차량이외의 고정자산, 기타 설비에 대한 보험료로 한다.
20. 지급수수료 : 원고료, 감정료, 금융수수료, 용역수수료 등으로 한다.
21. 업무추진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대민관계, 접대비, 회의비, 철야작업시의 숙식비,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제비용으로 한다.
22. 광고선전비 : 상품, 제품판매 이외의 공고료, 광고료 및 기타로 한다.
23. 교육훈련비 : 종업원의 연수를 위한 제경비 및 예비군, 민방위비 등으로 한다.
24. 조사분석비 :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비로 한다.
25. 포상비 : 종업원 및 잡급에 대한 상금(상품구입비 포함)으로 한다.
26. 판매촉진비 :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대고객관계 접대비, 회의비 및 기타 판매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27. 회의비 : 회의활동과 직접관련 있거나 그러한 활동에 배부될 수 있는 지출로 한다.
28. 근로복지기금 : 직원들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적립한 기금에 대한 지출로 한다.

다.

29. 기타의 관리비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관리비로 한다.

표준안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를 대분류 항목으로 하고 인건비등의 계정을 각각 판매인건비등과 관리인건비등으로 나누어 판매비와 관리비 하에 구분하고 있다. 반면, KOBACO는 현재 이러한 구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는 직접구분이 어려운 각각의 비용항목별에 대해 각각의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 업무활동내역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집계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여비교통비는 각 전표별로 판매 및 관리항목으로 기입을 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만일 인건비등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누어 집계, 보고하는 것이 관련 비용에 비해 정보의 유용성을 현저하게 높인다고 판명되면, 표준안과 같이 나누어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커다란 효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대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반면에, 정부당국이 실제 판매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현금흐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구분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요인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중이다.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가 인건비등에 대한 구분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비중을 짐작하기 어렵다. 만일 관리업무의 비중이(규모가) 판매업무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대항목으로 구분 하고 인건비등을 각각의 대항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KOBACO 및 신규 민영미디어랩이 K-IFRS 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분이 전표입력 단계에서 수행되고, 인건비에 관련된 구분은 업무분장 또는 업무활동(업무량) 조사를 통하여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인건비등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되어 집계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 구분된 인건비등을 규제보고를 위해 재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커다란 비용이 발생하거나 업무상의 복

잡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불필요한 과정으로 판단하고, 또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는 K-IFRS의 표준체계 및 이에 대한 근거논리를 고려한다면, 인건비등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것을 추가로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반년 마다 업무활동을 조사하여 역무별로 회계분리하게 되어있으며, 이와 유사한 조항을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인건비 중 공통비의 배부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45조(금융수익의 분류) 금융수익의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자수익 : 대여채권 및 국·공·사채 등에 대한 수입이자 및 수입할인료로 한다.
2. 기타금융수익 : 전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수익으로 한다.

제46조(금융비용의 분류) 금융비용의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자비용 : 당좌차월, 장·단기차입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으로 한다.
2. 기타 금융비용 : 전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으로 한다.

제45조와 제46조는 과거 영업외 비용의 항목이었던 이자비용 및 수익을 표준안에 따라 금융수익, 금융비용으로 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수익(표준안은 ‘사업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과 구분하여 그 아래에 표시함으로써 과거의 영업외 항목표기와 같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제45조2의 기타금융수익 및 제46조2의 기타금융비용 등은 KOBACO의 경우 나타나지 않으나 민영미디어랩의 경우 발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7조(지분법투자손익) 지분법투자손익 : 지분법적용주식처분이익, 지분법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지분법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등의

합으로 한다.

지분법관련 투자손익 역시, KOBACO의 경우 나타나지 않으나 민영미디어랩의 운영형태에 따라 발생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8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손익의 분류) 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의 수익: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합으로 한다.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의 비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합으로 한다.

제49조(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 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에 포함된다.(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의 세효과가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오류수정의 소급적용은 예외)

제50조(계속영업순이익(손실)) 계속영업순이익(손실) : 계속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순이익(손실)으로 한다.

제51조(중단영업손익) 중단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세후순이익(손실)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의 합계로 한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중단영업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미디어랩의 일반적인 운영형태 상 중단영업의 발생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단, 규제상의 변동에 따른 발생가능성을 고려하고, 표준안의 형태를 따라 구분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52조(기타포괄손익의 분류) 기타포괄손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지분법

적용주식 기타포괄손익변동, 재평가차익, 기타포괄법인세효과 및 그밖의 기타 포괄손익의 합으로 한다.

기타포괄손익을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 미디어렐의 손익성과에 대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규제 상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항목으로 묶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53조(총포괄손익)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실과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손익의 합계로 한다.

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에 대하여 각 조의 항별로 별도로 나열하고 필요한 개념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54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연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도
2. 사업구분 및 사업내역 설명
3.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설명
4. 배부기준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

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 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간의 회계분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회계분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을 보칙에 포함하였다.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회계정리 및 보고를 유도하여 규제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배부기준의 지속적이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적용될 배부기준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다. 우선은 사업자의 선택에 맡기되 그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로 전기통신회계, IPTV법에 동일한 조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5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이 기준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디스켓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에서 제시하는 ‘3월 이내’에 제출을 따랐다. 몇몇 고시안에서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매년 제출일자가 달라지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계자료의 제출 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과 영업보고서 담당 이사의 확인·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포함될 경우, 자료의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수평규제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며, 본 기준의 초기 적용에 있어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56조(보고서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회계자료를 검증을 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 제73조5(광고판매회사의 자료제출)에 보고서의 검증에

대한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검증의 필요성에 따라 보고서의 검증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음을 재천명하였다.

제57조(회계자료의 관리 및 유지)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 항목에 대한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검증 등을 통한 규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제58조(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방송 및 방송광고판매와 관련된 회계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특히 회계분리와 관련하여 배부기준의 적정성 등 회계관련 이슈를 해석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반을 갖춘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

⑥ 부속명세서

K-IFRS 표준안에 기초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가 별지서식 제1호와 제2호로 각각 정의되었으며, 그 밖에 부속명세서 상의 현금흐름표는 기존의 통신 및 방송회계에서 요구하는 현금흐름표와 커다란 차이가 없어 별도의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다. 현금흐름표는 당기순손익에 대한 차감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도출하는 간접법 형태를 부속명세서로 정의하고 있으나 직접법을 통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도 무관하다. 직접법에 의할 경우, I. 영업활동현금흐름 상의 항목이 1. 영업활동 현금유입의 분

류, 2. 영업활동 현금유출의 분류로 변동되며 각 분류 하에 현금유입 및 유출의 세부항목을 기재한다. 부속명세서의 현금흐름표(별지서식 제3호)는 표준안과 같이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대한 환율변동효과'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별지서식 제4호는 사업부문명세서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에 대한 수익 및 비용의 회계분리를 통한 손익보고를 요구한다. 제4호를 통해 경영 사업자의 부문별 성과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5-1호 및 제5-2호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매출액을 각각 방송사업자와 광고주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정의하고, 제5-3호는 연계판매를 통한 매출액명세서로 중소매체에 대한 판매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다. 제5-4호는 (공·민영)교차판매명세서 부분이나 확정 법안에 따라 필요성이 없을 수 있어 별도의 양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기준에는 지역별 판매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별(지역본부별) 매출현황의 자료를 명세서화 할 수 있다.

<표 6> 지역별(지역본부별) 매출액 명세서(안)

구분	본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합계
I. 방송광고료 수입(A)						
II. 방송광고 매입비(B)						
III. 매출액						
1. 광고수탁수수료(A-B)						
IV. 매출원가						
1. 위탁대행 수수료						
V. 매출총이익						

위와 같은 형태는 본 기준의 근거가 되는 표준안의 사업형 포괄손익계

산서의 형태와는 달리, 위탁대행수수료를 매출원가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태는 판매대행수수료나 관련 위탁대행수수료가 자율적으로 또는 시장의 영향에 의해 결정, 변동되는 경우 사업수익률의 파악 등에 유용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6호는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에 대한 명세서로, 특수관계자, 외국인 및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소유관계 및 소유지분변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특수관계자의 여부는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따르고, 외국인의 방송광고산업에의 참여 현황 등을 구분한다.

V. 결 론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 제반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경쟁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정보를 규명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규제보고체계 및 보고내용의 정리이다. 본 연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산업에 대한 경쟁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요 및 내역을 규명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회계제도를 정비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투명성의 확보, 사업자간 공정경쟁, 광고시장의 활성화, 중소방송지원(취약매체지원), 방송발전기금 산정기반의 확보 등을 위한 공·민영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정리(처리) 및 보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적인 계획 및 수행을 위한 규제정보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기준(고시)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정보는 방송광고 판매정책의 사후 규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된다.

해외 및 국내 미디어랩 현황, 방송 및 미디어랩 규제현황 및 회계규제 등을 파악하고, 현행사업자와의 회의, 현행사업자의 회계시스템, 외부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 분석을 통해 규제목표의 정의로부터 하향식으로 회계정보를 규정하고, 다시 이를 사업자 현행 보고시스템 등의 분석을 통해 정리된 회계정보와 대응함으로써 연구의 체계성 및 기준(안)의 충분성, 완결성 및 보고·규제 수월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준(고시)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재무제표, 제3장 재무상태표, 제4장 포괄손익계산서, 제5장 보칙 및 부칙과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각 장 및 보칙과 부칙에 대하여 조문별로 조문의 내용과 조문의 근거내지는 필요성

을 설명하였다.

별지서식으로는 제1호 재무상태표, 제2호 포괄손익계산서, 제3호 현금흐름표, 제4호 사업부문명세서, 제5-1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매출액명세서_방송사업자별, 제5-2호 방송광고판매대행매출액명세서_광고주별, 제5-3호 연계판매 매출액명세서, 제6호 주주현황 및 변동명세서를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통해 규제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에 대한 수요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교차판매나, 지역별 영업현황, 위탁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는 필요 시 별도의 명세서를 구성하여 고시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나 명세서의 서식(안)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일정 한계로 작용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KOBACO의 경우, 외부목적 재무보고를 수행하고 있어 사용 계정이나 회계처리방법 등이 이미 기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미디어랩법의 도입 이후에 법제도 및 공기업의 운영행태에 따른 규제당국의 방향에 따라 운영행태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에 대한 공영미디어랩의 운영 방식이나 절차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영미디어랩의 경우, 향후 발생가능하거나 허용될 수 있는 신규진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운영행태나 영업범위에 대한 가정이나 예측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이 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에 대한 규제정보 수요충족에 초점을 둠으로써 타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여 고시(안)을 정리하였다. 또한 확정된 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고시(안)을 확장하고,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목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수요를 고시(안)을 통해 충족시키는 데 충실함으로써 향후 미디어랩법의 추이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의 수행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로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산업의 규제회계제도를 위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한 결과물

인 고시(안)은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K-IFRS)를 고려하여 관련 재무제표 및 구성항목을 정의한 최초의 고시(안)으로 향후 제반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등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회계보고의 항목을 세밀히 항목별로 정의함으로써 내용면에서 풍부하고, 향후 사업자가 보고체계를 구축하거나, 규제당국에서 K-IFRS 도입에 따른 법령의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안**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xx호

방송법 제73조의5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xx월 xx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73조의5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사업자가 「방송법」 제7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3의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차판매”라 함은 공영 사업자가 민영방송사업자의 광고를 판매대행하거나 민영 사업자가 공영방송사업자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계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서로 다른 매체의 광고를 묶어서 판매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4. “회계분리”란 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사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할당”이란 자산등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배부”란 자산등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

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접비(자산)”란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공통비(자산)”란 2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의 기본원칙)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의 회계정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항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기준에서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재무제표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하고, 부속명세서는 매출액명세서, 연계판매매출명세서, 주주현황 및 변동명세서 등의 명세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부속명세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제6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의 회계분리)

① 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

하는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자산등을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의 자산등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할당이 용이하지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한다.

제7조(계정의 구분) 사업자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 보고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3장 재무상태표

제8조(유형자산 분류) ①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토지 : 대지 · 임야 · 전답 ·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 조명 ·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선거 · 교량 · 안벽 · 부교 · 궤도 · 저수지 · 갯도 · 굴뚝 ·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단, 철도 차량은 별도의 계정으로 표시한다.
5. 공구와 비품 : 사무용품, 공구 및 비품 등으로 한다.
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7. 기타의 유형자산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

형자산으로 한다.

제9조(무형자산 분류) ①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3. 기타무형자산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10조(투자부동산의 분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서의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11조(장기성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분류) 장기성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제외)으로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2. 장기대여금 : 일반적 상거래와는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서 회수기한이 대차대조표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3. 부도어음 : 부도어음으로 한다.
4. 보증금 : 전세권·전신회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회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기타의 수취채권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수취채권으로 한다.

제12조(이연법인세자산)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 및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말한다.

제13조(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으로 1년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만기보유금융자산) 취득당시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

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단,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기타의 금융자산) 제13조 및 제14조에 속하지 않는 장기성 금융자산으로 한다.

제16조(기타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각조에 속하지 않은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선급금, 장기선급비용 등과 같은 금액들의 합으로 한다.

제17조(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으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

을 의미한다.

제18조(재고자산의 분류) 재고자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저장품 : 소모품 · 소모공구기구비품 · 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단,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9조(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분류)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제외)으로 단

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
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
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3. 대손충당금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
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4. 미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
로 한다.
5.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1년이
내에 수취할 금액으로 한다.

제20조(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 목적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포함)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한다.

제21조(유동성 매도가능 금융자산) 유동성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으로 1년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 예정인 경우로 한다.

제22조(유동성 만기보유 금융자산) 유동성 만기보유 금융자산

： 취득당시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자산으로 한다. 단, 당기손익인식항목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기타의 금융자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속하지 않는 단기성 금융자산으로 한다.

제24조(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로 한다. 단기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기타 유동자산) 유동자산 각조에 속하지 않은 유
동자산으로서 선급금, 선급비용, 당기법인세자산 등과
같은 금액들의 합으로 한다.

제26조(자본금 분류) 자본금은 납입자본 또는 정부지분
자본금, 비정부지분자본금 및 기본재산 등의 합계로 한
다.

제27조(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타의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재평가적립금과, 자기주
식처분손실을 차감한 자기주식처분이익 및 기타의 자
본잉여금 등의 합계로 한다.

제28조(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

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29조(이익잉여금 분류) 이익잉여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의적립금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된 준비금 등으로 한다.
2.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처분전 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 결손금.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손익을 포함한다.
3. 기타의 이익잉여금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30조(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각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지분법자본변동, 재평가차익 등과 같은 항

목의 합계로 한다.

제31조(차입금 분류) 차입금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차입금 :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제32조(퇴직급여부채) 퇴직급여채무, 국민연금전환금,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의 합으로 한다.

제33조(장기성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장기성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장기임대보증금 등의 합으로 한다.

제34조(이연법인세부채)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로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즉,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으로 한다.

제35조(비유동금융부채 분류) 비유동금융부채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채 : 1년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한다.
2. 사채발행차금 : 사채발행 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으로 한다.
3. 전환사채 :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 유가증권의 소유자에게 발행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한다.
5. 금융리스부채 :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계상하는

부채로, 보고기간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상환될 금액.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제36조(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각조에 속하지 않은 비유동부채로서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선수금, 장기예수금, 장기선수수익 등으로 함으로 한다.

제37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분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서 보고기간 이후 1년(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상환을 통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 :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무 중 보고기간 말 현재 미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 :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인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제38조(충당부채 분류) 1년 내에 사용되는 충당부채로 한다.

제39조(금융부채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유동성장기부채, 금융리스부채 등의 합으로 한다.

제40조(당기법인세부채 분류)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제41조(기타유동부채 분류) 기타유동부채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미지급비용 :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으로 한다.
2. 선수금 :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3.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
수액으로 하며, 방송발전기금의 위탁징수에 따른 예
수금을 포함한다.
4. 예수부가세 : 위 3호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예수하는
부가세로 한다.
5. 선수수익 : 이미 수취한 수익 중 차기 이후에 귀속될
수익으로 한다.
6. 기타의 기타유동부채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4장 포괄손익계산서

제42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수익의 분류) 사업수익 분
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수익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한 수익으로 한다.

2. 기타수익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수익으로 대손충당금환입, 외화환산이익, 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기타 사업수익의 합으로 한다.

제43조(사업비용의 분류) 사업비용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대행수수료 : 방송광고판대행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2. 기타사업비용 : 방송광고판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의 비용으로 기타의 외화환산손실, 업무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한다.

제44조(판매비와 관리비의 분류) 판매비 분류는 판매비 이외의 경영전반에 관한 관리비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원급여 : 임원(비주주)에 대한 정기급여로 한다.

2. 급여와 수당 : 종업원에 대한 정기급여 및 임금(직책수당 포함) 종업원에 대한 상여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등 제수당과 임원상여금(임원은 필요에 따라 과목을 개별계정에 구분 표시)으로 한다.
3. 퇴직급여 : 장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설정하거나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납부시 인식하는 비용으로 한다.
4. 기타의 인건비 : 전 1호, 2호, 3호의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건비로 한다.
5. 복리후생비 :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액, 급식비, 체육비, 연성회비, 산재보험 등. 급여성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6. 여비교통비 : 국내외 여비와 교통비로 한다.
7. 통신비 : 전신료, 전화료, 우표대, 텔렉스료 등으로 한다.
8. 전력 및 수도료 : 동력 및 전등용의 전기료, 수도료로 한다.

9. 연료유지비 : 각종 유류대 및 보일러등 난방용 연료대로 한다.
10. 세금과 공과 :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각종 공과금으로 한다.
11. 소모품비 :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잡품 및 사무용 문방구에 대한 경비로 한다.
12.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으로 한다.
13. 도서인쇄비 : 신문·통신구독료, 도서구입비와 인쇄비로 한다.
14. 지급임차료 : 토지·건물 및 기타의 임차료로 한다.
15.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로 한다.
16. 무형자산상각비 :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로 한다.
17. 수선유지비 : 건물 및 부속설비, 비품 등의 수선유지비로 한다.
18. 차량비 : 자동차 기타 차량의 유지비, 유류대, 소모품비, 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으로 한다.
19. 보험료 : 차량이외의 고정자산, 기타 설비에 대한 보

협료로 한다.

20. 지급수수료 : 원고료, 감정료, 금융수수료, 용역수수료 등으로 한다.

21. 업무추진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대민관계, 접대비, 회의비, 철야작업시의 숙식비,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제비용으로 한다.

22. 광고선전비 : 상품, 제품판매 이외의 공고료, 광고료 및 기타로 한다.

23. 교육훈련비 : 종업원의 연수를 위한 제경비 및 예비군, 민방위비 등으로 한다.

24. 조사분석비 :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비로 한다.

25. 포상비 : 종업원 및 잡급에 대한 상금(상품구입비 포함)으로 한다.

26. 판매촉진비 :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대고객관계 접대비, 회의비 및 기타 판매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27. 회의비 : 회의활동과 직접관련 있거나 그러한 활동에

배부될 수 있는 지출로 한다.

28. 근로복지기금 : 직원들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적립한 기금에 대한 지출로 한다.

29. 기타의 관리비 : 전 각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관리비로 한다.

제45조(금융수익의 분류) 금융수익의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자수익 : 대여채권 및 국·공·사채 등에 대한 수입 이자 및 수입할인료로 한다.

2. 기타금융수익 : 전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수익으로 한다.

제46조(금융비용의 분류) 금융비용의 분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자비용 : 당좌차월, 장·단기차입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으로 한다.

2. 기타 금융비용 : 전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으로 한다.

제47조(지분법투자손익) 지분법적용주식처분이익, 지분법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지분법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등의 합으로 한다.

제48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손익의 분류) 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의 수익: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합으로 한다.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의 비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합으로 한다.

제49조(법인세비용) 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에 포함된다.(법인세추납액과 환급액의 세효과가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오류수정의 소급적용은 예외)

제51조(계속영업순이익(손실)) 계속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순이익(손실)으로 한다.

제52조(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지분법적용주식 기타포괄손익변동, 재평가차익, 기타포괄법인세효과 및 그밖의 기타포괄손익의 합으로 한다.

제53조(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과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손익의 합계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54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연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도
2. 사업구분 및 사업내역 설명
3.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설명
4. 배부기준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기준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디스켓 포함)하여야 한다.

제56조(보고서의 검증)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회계자료를 검증을 할 수 있다.

제57조(회계자료의 관리 및 유지) 사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회계자료 분류항목에 대한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목차]

서 식	구 분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2호 서식 포괄손익계산서	
제3호 서식 현금흐름표	
제4호 사업(영업)부문 명세서	제5-1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매출액 명세서_방송사업자별
제5호 서식	제5-2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매출액 명세서_광고주별
방송광고판매대행수수료 명세서	제5-3호 연계판매 매출액 명세서 제5-4호 교차판매매출액 명세서
제6호 서식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 현재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 현재

기업명:

(단위:원)

과 목	금 액	
	201X년	201x년
자산		
I.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차량운반구		
5. 공구와비품		
6. 건설중인자산		
7. 기타의 유형자산		
(2) 무형자산		
1. 개발비		
2. 소프트웨어		
3. 기타의 무형자산		
(3) 투자부동산		
(4) 장기성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1. 장기금융상품		
2. 장기대여금		
3. 부도어음		
4. 보증금		

5.	기타의 장기성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5)	이연법인세자산		
(6)	매도가능금융자산		
(7)	만기보유금융자산		
(8)	기타의금융자산		
(9)	기타비유동자산		
II.	매각예정비유동자산		
III.	유동자산		
(1)	재고자산		
1.	저장품		
(2)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1.	단기금융상품		
2.	단기대여금		
3.	매출채권		
4.	대손충당금		
5.	미수금		
6.	미수수익		
7.	보증금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5)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		
(7)	기타의금융자산		
(8)	현금및 현금성자산		
(9)	기타유동자산		
자 산 총 계			
자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기타의 자본잉여금		
III.	자기주식		
VI.	이익잉여금		
1.	임의적립금		
2.	미처분이익잉여금		
3.	기타의 이익잉여금		
V.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총계			
부채			
I.	비유동부채		
(1)	차입금		
(2)	퇴직급여부채		
(3)	장기성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	이연법인세부채		
(5)	비유동금융부채		
1.	사채		
2.	사채발행차금		
3.	전환사채		
4.	신주인수권부사채		
5.	금융리스부채		
(6)	기타비유동부채		
II.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관련부채		
III.	유동부채		
(1)	차입금		
(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	매입채무		
2.	미지급금		
3.	임대보증금		

(3)	총당부채		
(4)	금융부채		
(5)	당기법인세부채		
(6)	기타유동부채		
	1. 미지급비용		
	2. 선수금		
	3. 예수금		
	4. 예수부가세		
	6. 선수수익		
	7. 기타의 기타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및부채총계			

[별지 제2호 서식] - 판매비/관리비 미구분형 (권장안)

포괄손익계산서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과목	금 액	
	201X년	201X년
I. 사업수익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수익		
(2) 기타사업수익		
II. 사업비용		
(1) 위탁대행수수료		
(2) 기타사업비용		
(3) 판매비와관리비		
1. 임원급여		
2. 급료와수당		
3. 퇴직급여		
4. 기타의 인건비		
5. 복리후생비		
6. 여비교통비		
7. 통신비		
8. 전력및수도료		
9. 연료유지비		
10. 세금과공과		

	11. 소모품비		
	12. 대손상각비		
	13. 도서인쇄비		
	14. 지급임차료		
	15. 감가상각비		
	16. 무형자산상각비		
	17. 수선유지비		
	18. 차량비		
	19. 보험료		
	20. 지급수수료		
	21. 업무추진비		
	22. 광고선전비		
	23. 교육훈련비		
	24. 조사분석비		
	25. 포상비		
	26. 판매촉진비		
	27. 회의비		
	28. 근로복지기금		
	29. 기타의관리비		
III.	사업이익		
IV.	금융수익		
(1)	이자수익		
(2)	기타금융수익		
V.	금융비용		
(1)	이자비용		
(2)	기타금융비용		
VI.	지분법투자손익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VIII.	법인세비용		

IX.	계속영업순이익		
X.	중단영업손익		
X I.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손익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수익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비용		
X II.	당기순이익		
X III.	기타포괄손익		
X IV.	총포괄손익		

[별지 제2호 서식] - 판매비/관리비 구분형 (대안)

포괄손익계산서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단위:원)

기업명:

과목	금 액	
	201X년	201X년
I. 사업수익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수익		
(2) 기타사업수익		
II. 사업비용		
(1) 위탁대행수수료		
(2) 기타사업비용		
(3) 판매비		
1. 임원급여		
2. 급료와수당		
3. 퇴직급여		
4. 기타의 인건비		
5. 복리후생비		
6. 여비교통비		
7. 통신비		
8. 전력및수도료		
9. 연료유지비		
10. 세금과공과		
11. 소모품비		

	12.	대손상각비
	13.	도서인쇄비
	14.	지급임차료
	15.	감가상각비
	16.	무형자산상각비
	17.	수선유지비
	18.	차량비
	19.	보험료
	20.	업무추진비
	21.	교육훈련비
	22.	조사분석비
	23.	포상비
	24.	판매촉진비
	25.	기타의 판매비
(4)		관리비
	1.	임원급여
	2.	급료와수당
	3.	퇴직급여
	4.	기타의 인건비
	5.	복리후생비
	6.	여비교통비
	7.	통신비
	8.	전력및수도료
	9.	연료유지비
	10.	세금과공과
	11.	소모품비
	12.	대손상각비
	13.	도서인쇄비

14.	지급임차료		
15.	감가상각비		
16.	무형자산상각비		
17.	수선유지비		
18.	차량비		
19.	보험료		
20.	지급수수료		
21.	업무추진비		
22.	광고선전비		
23.	교육훈련비		
24.	조사분석비		
25.	포상비		
26.	회의비		
27.	근로복지기금		
28.	기타의관리비		
III.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익		
IV.	금융수익		
(1)	이자수익		
(2)	기타금융수익		
V.	금융비용		
(1)	이자비용		
(2)	기타금융비용		
VI.	지분법투자손익		
VII.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사업손익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수익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비용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IX.	법인세비용		
X.	계속영업순이익		
XI.	중단영업손익		
X II.	당기순이익		
X III.	기타포괄손익		
X IV.	총포괄손익		

[별지 제3호 서식]

현금흐름표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단위:원)

과목	금액	
	2007년	2006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손실)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가.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나. 퇴직급여		
다. 기타현금유출이없는비용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가. 지분법이익		
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다. 기타현금유입이없는비용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Ⅱ +Ⅲ+Ⅳ)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부문명세서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구 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사업	합계
사업수익 기타수익 판 매 비 관 리 비 금 융 수 익 금 융 비 용 기 타 비 용 부 문 세 전 이 익 법 인 세 비 용			
사 업 부 문 손 익			

[별지 제5-1호 서식]

방송광고판매대행 매출액 명세서_방송사업자별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방송사업자별	매체별 수수료					특수관계자 수수료
	TV	RADIO	지상파DMB	기타	합계	
1. KBS1						
2. KBS2						
3. MBC						
4. SBS						
5. KBS Radio						
합 계						

[별지 제5-2호 서식]

방송광고판매대행 매출액 명세서_광고주별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광고주	매체 별 매출					특수관계자 수수료
	TV	RADIO	지상파DMB	기타	합계	
1.						
2.						
3.						
4.						
5.						
합 계						

[별지 제5-3호 서식]

연계판매매출액 명세서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CBS	PBS	TBS	OBS	...	소계	합계
MBC								
구분		YTN	MBN	WBS	GPN	...	소계	합계
KBS								

[별지 제6호 서식]

주주현황 및 변동 명세서

제X(당)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제X(전)기 201X년 XX월 XX일부터 201X년 XX월 XX일까지

기업명:

(단위:원)

주주명	출자비중				방송사업자 여부	특수관계여부(주1)	국적(주2)
	주식수	투자금액	지분율(%)	변동율(%)			
합 계			100%				

(주1) 특수관계여부는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의 규정에 따름

(주2) 주주가 법인인 경우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해당국적 기재

(주3) 지분율이 5%이상인 주주만 표시하되, 특수관계 주주는 5%미만이라도 모두 기재하고, 기타주주는 기타소액주주로 기재하여 지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10-14

방송광고판매사업 회계기준 정책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10년 12월 (비매품)

발 행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 webmaster@kcc.go.kr

Homepage : www.kcc.go.kr
